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81호 2022. 11. 1.(화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2-19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3
- 하동군 고시 제2022-197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 4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고시 제2022-7호 원박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5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고시 제2022-8호 명사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1차) 승인 고시 6
- 하동군 고시 제2022-200호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허가 고시 7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2-1335호 하동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
- 하동군 공고 제2022-1365호 하동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6
- 하동군 공고 제2022-1367호 하동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28

일반공고

- 하동군 공고 제2022-1359호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고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공고 46

회 람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 제2022 - 196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10. 24.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1-35호
2. 허가연월일 : 2021. 8. 24.
3. 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및 식물의 재배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구분	장소	면적(㎡)	비고
당초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 993(인접:악양면 매계리 344-1번지)	127	면적 증
변경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 993(인접:악양면 매계리 344-1번지)	307	

6. 점·사용의 기간 : 2021. 08. 24. ~ 2026. 08. 23.

하동군 고시 제2022-197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10. 24.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2-75호
2. 허가연월일 : 2022. 10. 24.
3. 점·사용의 목적 : 식물의 식재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696-1, 705㎡
5. 점·사용의 기간 : 22.10.24.~27.10.23.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중도길 **, 배종*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고시 제2022-7호

『원박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하동군 『원박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하 동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원박마을 만들기 사업

2. 사업의 목적

-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지역 특성을 골고루 잘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역동적인 지역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함

3. 사 업 비 : 금500,000천원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사업구역: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일원
- 사업내용
 - 주차장 조성 1식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1식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21년	2022년
계	500	200	300
국 비	-	-	-
도 비	-	-	-
군 비	500	200	300

6.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7. 사업시행 기간 : 2021년 ~ 2023년(3개년)

8. 기타사항

- 주요 사업내용, 세부 설계도서 등은 담당부서(농촌진흥과 농촌개발담당, T.055.880.6974)에 비치하며, 일반인 열람 가능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고시 제2022-8호

『명사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1차) 승인 고시

하동군 『명사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1차)을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하 동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명사마을 만들기 사업

2. 사업의 목적

-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지역 특성을 골고루 잘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역동적인 지역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함

3. 사업비 : 금358,000천원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사업구역: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일원
- 사업내용
 - 마을안내 간판 설치 1식
 - 마을 도로변 꽃길 조성 1식
 -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및 가드레일 설치 1식
 - 폭포정 정비 1식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1식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21년	2022년
계	500	200	300
국비	-	-	-
도비	-	-	-
군비	500	200	300

6.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7. 사업시행 기간 : 2021년 ~ 2023년(3개년)

8. 기타사항

- 주요 사업내용, 세부 설계도서 등은 담당부서(농촌진흥과 농촌개발담당, T.055.880.6974)에 비치하며, 일반인 열람 가능

하동군 제2022-200호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를 고시합니다.

- 아 래 -

점용자	주 소	하천 명칭	점용위치	점용 면적	점용목적	유효기간
강*례	화개면 부춘리 검두길 38	섬진강	화개면 부춘리 798-3	2,662㎡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2022. 09. 04. ~2027. 09. 03.

2022년 10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22 - 1335호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2. 제안 이유 :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청년정책 추진을 도모
3. 주요 내용
 - 청년의 정책사업의 종류 구체화로 지원근거 마련(안 제14조)
 -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사업, 능력개발 등을 위한 사업
 - 고용 확대를 위한 사업, 청년문화, 예술활성화를 위한 사업
 -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사업
 - 청년사업 예산 지원 관련 사항 추가 (안 제16조)
 - 청년에 대한 예산 지원 명시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하동군(참조 : 지역활력추진단, 전화 055-880-7153, FAX 055-880-7159, e-mail : un3789@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하동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청년정책 사업 추진)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과 권익증진, 그 밖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비용지원

나. 교통, 보건, 안전,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다. 빈집정보 제공 및 매입, 임대료 지원

라. 청년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애로 및 사회, 경제, 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나. 청년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다. 창의적, 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지원 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구직자의 직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사업

나. 청년 일자리 불일치 해소 대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라. 청년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청년근로자의 권리구제 지원 사업

4.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나.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 지역 청년문화·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5.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사업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홍보 사업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의 제목“(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행·재정적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청년정책 사업) 군수는 청년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제2호의 청년정책의 주요사항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제14조(청년정책 사업 추진)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과 권익증진, 그 밖에 역량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비용지원 나. 교통, 보건, 안전,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다. 빈집정보 제공 및 매입, 임대료 지원 라. 청년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업애로 및 사회, 경제, 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나. 청년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다. 창의적, 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지원 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구직자의 직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사업

나. 청년 일자리 불일치 해소 대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라. 청년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청년근로자의 권리구제 지원 사업

4.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나.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 지역 청년문화·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5.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사업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홍보 사업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청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행·재정적 지원 등)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청년정책 사업을 추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인·단체 및 개인에
 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
 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하동군 공고 제2022-1365호

하동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하동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하 동 군 수

1. 행정규칙명 : 하동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2. 제안 이유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확립하여 하동군 소속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 시키기 위한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중대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에 따른 하동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신설
4. 의견 제출 :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하동군(참조 : 안전총괄과)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우편번호: 52333), 하동군청 안전
총괄과

○ 전화 : 055-880-7134, FAX : 055-880-2249

○ 이메일 : en123@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우편, 메일 등

붙임 1. 실시규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하동군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정안 1부. 끝.

【별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행정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지침)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훈령 제 호

하동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동군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모든 사업장(본청, 직속기관, 읍·면 및 의회사무과 소속 사업장을 말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4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5조(평가대상) 근로자(수급, 수탁인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각 호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

1.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2.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 물질
3.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4.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제6조(실시시기)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평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2. 정기평가: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1회/년) 정기적으로 실시

3. 수시평가: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
 - 가. 사업장 건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써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 바.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2. 위험성평가 담당자 지정 등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
3.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의 추정·결정, 위험성을 파악해 감소대책에 대한 수립·실행
4.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
5.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

6.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

제8조(평가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9조(주지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침, 추진목표 및 그 밖의 주지 사항을 회의 또는 행사 등에서 홍보·주지 시키고,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② 안전관리보건책임자는 감소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를 주의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의견 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 비용, 운영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감소 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 및 보존)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작성하여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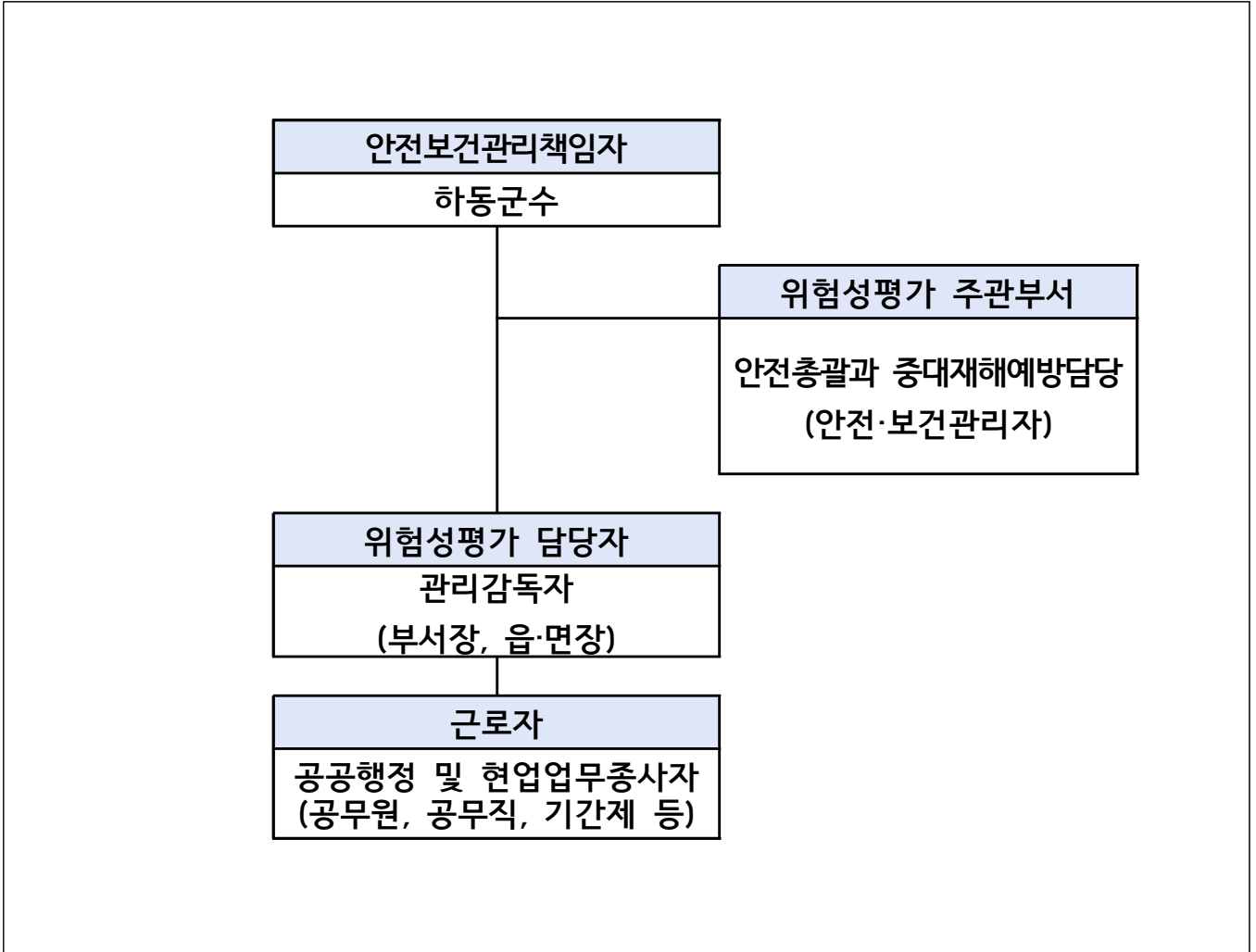
- ② 위험성평가 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 요인
 -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③ 위험성평가 기록은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 ④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 기록물을 연 1회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험성평가 조직 (제3조 관련)



[별표 2]

조직의 역할과 책임 (제4조 관련)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p>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하동군수)</p>	<p><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 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의 계획, 운영, 실시 결과 및 개선 조치 사항 승인 ○ 안전보건 관련 교육 이수 ○ 위험성평가 관련 예산지원 ○ 산업재해 예방 노력
<p>위험성평가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담당)</p>	<p><위험성평가 총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표 취합 및 검토 ○ 위험성평가 전반 기술적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p>위험성평가 담당자 (부서장, 읍·면장)</p>	<p><위험성평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이수 ○ 위험성평가 근로자 교육 실시(작업 전 교육 및 정기 교육 시 병행) ○ 사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 집중관리대상 현장 점검 ○ 위험성평가 관련 소요비용 관리 ○ 위험성평가 회의 및 교육 참석 ○ 작업별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작업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평가표 작성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p>근로자</p>	<p><위험성평가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위험성평가 과정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참여 ○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 방법 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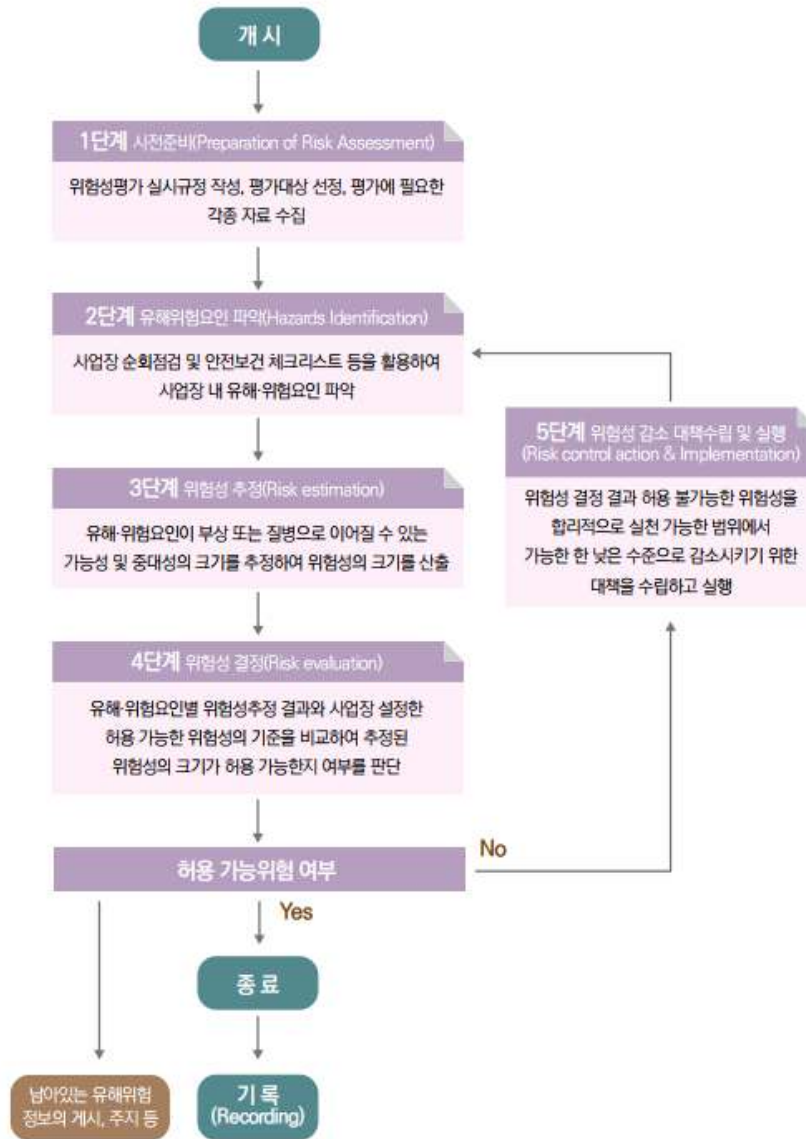
[별표 3]

위험성평가 절차(제8조 관련)

위험성평가는

- 【1단계】 사전준비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3단계】 위험성 추정
- 【4단계】 위험성 결정
-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위험성평가는 1회성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다음 순서를 반복함



- ① 1단계 :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작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 ②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 가장 중요한 단계,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

③ 3단계 :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1.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상	매우 높음	5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있어도 불비(不備)가 많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상	높음	4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가 없거나 상당한 불비(不備)가 있고, 비상정지장치, 표시·표지는 일부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중	보통	3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등 불비(不備)가 있고,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하	낮음	2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최하	매우 낮음	1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2.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기준
최대	사망	4	○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업무에 복귀 불가능),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대	장해 발생	3	○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일정 시점에서는 업무에 복귀 가능)
중	병원 치료	2	○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 처치(치료) 후 바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음)

3. 위험성 추정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최대	대	중	소
	단계 구분	4	3	2	1
최상	5	매우높음(20)	높음(15)	약간높음(20)	낮음(5)
상	4	매우높음(16)	약간높음(12)	보통(8)	낮음(4)
중	3	약간높음(12)	약간높음(9)	낮음(6)	매우낮음(3)
하	2	보통(8)	낮음(6)	낮음(4)	매우낮음(2)
최하	1	낮음(4)	매우낮음(3)	매우낮음(2)	매우낮음(1)

④ 4단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5단계로 구분하였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 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⑤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 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⑥ 6단계 : 기록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

하동군 공고 제2022-1367호

하동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하동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년 10 월 27 일

하 동 군 수

1. 행정규칙명 : 하동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규정
2. 제안 이유 : 기존 하동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규정 내용 보완 및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계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 범위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업무 내용 추가
 -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를 위한 내용 추가
 -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 의무 명시화 등

4. 의견 제출 :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하동군(참조 : 안전총괄과)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우편번호: 52333),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 전화 : 055-880-7133, FAX : 055-880-2249
- 이메일 : rmsdk@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우편, 메일 등

- 붙임 1. 관리규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하동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안 1부. 끝.

【별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행정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지침)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훈령 제 호

하동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동군수가 사업주인 사업장에서 하동군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 한다.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3.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7. 상·하수도 시설 등의 유지관리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② 이 규정은 법 제3조에 따라 군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며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각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사용부서의 장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 기계, 기구 및 작업 방법 등 물적·인적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및 근로자는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규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수칙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및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군수는 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산업보건의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군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법 제17조 및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① 군수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특별히 위험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부분에는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자) ① 군수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및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보건관리자) ① 군수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산업보건의) ① 군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한 산업보건의를 선임한다.

② 산업보건의는 영 제3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④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및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기타 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업무 추진상 조직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용자 위원

가. 대표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위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7명 이내의 부서장

2. 근로자 위원

가. 대표위원: 근로자 대표

나. 위원: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사용자 위원 및 근로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담당자(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중 1명에게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동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의 신분 및 활동보장) ① 군수는 근로자의 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직무수행과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로자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직무수행과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활동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등을 보장하고,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서면을 통한 심의·의결로 대체되어 진행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내용, 심의·의결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작성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① 위원회 회의 중 의결되지 않은 사항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차기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사항이 의결되지 않으면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원장
2. 안전·보건 대행업체의 장
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
4. 자격이 있는 안전·보건관리 전문가
5.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회의결과 공지) 위원회는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전 근로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20조(교육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보건교육) ① 법 제29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교육
2. 신규 채용자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5. 관리감독자 교육
6.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② 제1항 각 호의 교육 대상자, 교육 시기, 교육 시간, 교육 내용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근로자는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관리

제22조(안전보건관리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11월 말까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군 사업장의 다음 연도 안전보건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기본방침을 전 부서에 알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방호조치) ①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영 제70조에 따라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 기구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제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검사)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 결과 교부받은 검사확인증은 해당 기계·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은 작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5조(안전보건표지) 군수는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제26조(위험성평가) ① 군수는 건설물·기계·기구 등에 의한 작업행동 및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27조(안전진단)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실적
2. 유해요인제거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
3. 안전교육훈련
4. 사고원인조사 및 그 대책 수립
5. 안전관련 서류의 기록 및 보존
6.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진단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대책을 수립한 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순찰)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근로상태,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고 수시로 순찰한다.

제29조(사업장의 안전조치)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 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 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여부
4.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
5. 차량의 점검정비 적정 여부
6. 그 밖의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안전수칙) ①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을 제정 및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건관리

제31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군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년에 1회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②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이상이 있을 시 사용부서의 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이상이 있을 시 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급 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또는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작업환경측정) ① 군수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12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3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군수는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의 경우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수칙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군이 제공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수칙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 전 건강 체조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

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34조(유해요인조사) ① 군수는 직원이 근골격계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새로운 사업인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시간·작업 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2.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질환 징후와 증상유무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직원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유해요인 조사 시 관리감독자는 해당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직원과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5조(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등) 관리감독자는 해당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관리요령을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대상 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유해요인발생 부서의 보건수칙) 유해 요인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사용부서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상 필요한 작업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보건수칙을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보호구) ① 군수는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른다.

②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군수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법 제13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0조에 따른 질병 등에 걸린 사람에게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취업이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 또는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관리

제39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40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군수는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관련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1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도급인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영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2조(건설공사 발주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군수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법 제67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발주 공사시 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43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사고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작업 중지조치를 즉시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5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해당 사업장에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사고원

인,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 응급조치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 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 현장은 사고발생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④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석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6조(재해분석 및 대책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찾고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매년 사고 및 재해 현황을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분석결과 및 예방대책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7조(무재해운동)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48조(문서기록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법 제164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41조에 따른 서류는 해당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49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50조(안전·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공고 제2022 -1359호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오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가 격 기 준 일 : 2022. 07. 01

2. 결 정 · 공 시 일 : 2022. 10. 31.

3. 결 정 · 공 시 필 지 수 : 1,247필지

4. 결 정 · 공 시 내 용 : 토지지번별 m²당 가격

(토지지번별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

5. 이의신청 및 처리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2. 10. 31. ~ 11. 30.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서면)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우편접수가능

(전자민원)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 온라인 민원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필지는 이의신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재검증과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알려드리며,

-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하동군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 공간정보부서(055-880-2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31일

하 동 군 수